

# 구성원 참여 · 소통 기본 규정

제정 2020. 11. 0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가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민주공영대학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본교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성원 참여 · 소통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“구성원” 은 본교의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(재학생 및 휴학생)을 말한다.

② “구성원 참여” 는 본교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, 평가, 환류 단계까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 ·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총장의 책무)** ① 총장은 구성원 참여를 제도화하고,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성원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교육, 홍보 등을 통하여 구성원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구성원의 권리와 의무)** 구성원은 누구나 대학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, 본교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.

**제5조(위원회의 구성원 참여)** ① 본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성격상 공모제나 추천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성격상 호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.

**제6조(회의공개 원칙)** ① 본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, 회의안건 등을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, 회의안건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.

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7조(공청회 등의 구성원 참여)** ① 총장은 구성원의 복리·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, 규정 제·개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 결정, 규정 제·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구성단위, 단과대학, 학과, 부서 등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갈등조정을 위한 구성원 참여)** ① 총장은 갈등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현안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, 현안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예산편성의 구성원 참여)** 총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성원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정책 토론 등의 청구)** 구성원 단체 혹은 구성원 30인 이상은 본교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, 이에 대한 토론, 공청 및 설명회를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**제11조(구성원 의견조사의 실시)** ① 총장은 본교의 정책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성원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조사 후 구성원 의견조사 결과를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구성원 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.

**제1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** 구성원 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 ([기획예산팀-709](#), 2020.11.06.)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